

# 헌법재판소공보

제312호

2022년 10월 20일(목요일)

헌법재판소사무처 (1)

## — 목 차 —

### 법 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78호) ..... 1150

### 규 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51호) ... 1152

### 인 사

..... 1153

### 공지사항

주요업무일지 ..... 1154

심판사건통계표 ..... 1155

등록도서현황 ..... 1157

주요신착도서 ..... 1157

- 2022년도 9월 구입도서 ..... 1157

- 2022년도 9월 교환도서 ..... 1158

- 2022년도 9월 수증도서 ..... 1159

헌법재판소장 동정 ..... 1162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 1164

판 례 ..... 1165

# 법 률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로 한다.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2조를 각각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전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적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계산한다.

◇ **개정이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신설).

- 나.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신설).
- 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 라.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일 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 규 칙

###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51호) 2022. 9. 28.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제3조제4항).
- 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제3조제5항 신설).
- 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제3조제6항 신설).



# 인사

## ○ 헌법재판소 기록물평가심의회

- 2022. 9. 5.

강릉원주대학교 기록관리학협동대학원  
연구교수 김명훈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승일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차미경

위촉 헌법재판소 기록물평가심의회 외부위원  
(2022. 9. 5. ~ 2024. 9. 4.)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2022. 9. 6.

前 헌법연구위원 김현철  
前 헌법연구위원 하명호  
前 헌법연구위원 장철준  
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연구위원 정호경  
헌법연구위원 이도훈  
헌법연구위원 박종현  
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2022. 9. 6. ~ 2024. 9. 5.)

##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 2022. 9. 8.

前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기정  
해촉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 헌법논총 논문심사위원회

- 2022. 9. 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문현  
위촉 헌법논총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2022. 9. 13. ~ 2024. 9. 12.)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헌법연구위원 정호경  
헌법연구위원 박종현  
임명 헌법논총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2022. 9. 13. ~ 2024. 9. 12.)

## ○ 신규채용

- 2022. 9. 19.

임 관리서기보시보  
명 이미선 재판관실 근무

- 2022. 9. 26.

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근무  
(2022. 9. 26. ~ 2024. 9. 25.)

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비교헌법연구팀 근무  
(2022. 9. 26. ~ 2024. 9. 25.)

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비교헌법연구팀 근무  
(2022. 9. 26. ~ 2024. 9. 25.)

## ○ 휴직

- 2022. 9. 5.

헌법연구원 현소진  
명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 ○ 복직

- 2022. 9. 24.

헌법재판소사무처  
보안서기보 손혜형  
명 휴직 복직

## ○ 퇴직

- 2022. 9. 26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비교헌법연구팀  
행정주사(일반임기제) 임기영  
의원면직

최인호

진호성

임기영

장효훈

- 2022. 10. 5.

헌법연구관 유 경 민

의원면직

## 공 지 사 항

### ○ 주요업무일지

<2022년 9월>

- 9. 2.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제1차 출제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9. 2.(금) 15:00
  - 장소: 5층 대회의실
- 9. 5.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중급 제1기)」 실시
  - 교육기간: 9. 5.(월) ~ 9. 7.(수)
  - 교육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8명
  - 교육내용: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 이해 등
- 9. 13. 라트비아 헌법 제정 100주년 및 라트비아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출장국가: 라트비아
  - 출장기간: 9. 13.(화) ~ 9. 20.(화)
  - 출장자: 재판관 이미선, 헌법연구관 장시원
  - 출장목적: 라트비아 헌법 제정 100주년 및 라트비아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9. 15. 변론
  - 2017헌바42·294·366·431·432·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9. 19.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제2기)」 실시
  - 교육기간: 9. 19.(월) ~ 9. 22.(목)
  - 교육대상: 대학생 30명
  - 교육내용: 헌법 이론 및 헌법재판 실무 교육, 분임토의 등
- 9. 21. 202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9. 21.(수)

- 수록내용: 지방재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 9종
- 발간부수: 각 670부

- 9. 23.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26. 「신임 책임연구관 연수」 실시
    - 연수기간: 9. 26.(월) ~ 9. 27.(화)
    - 연수대상: 임기영, 진호성, 장효훈 신임 책임연구관
    - 연수내용: 책임연구관의 역할과 기능 등
  -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실시
    - 연수기간: 9. 26.(월) ~ 10. 1.(토)
    - 연수대상: 방글라데시 대법원 재판실무 담당자 4인
    - 연수내용: 한국 헌법재판소 소개, 위헌 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권한쟁의·정당해산 심판, 방글라데시 사법제도 소개 등
  - 9. 27. 변론
    -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9. 29. 선고결과: ‘2021헌가28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정’ 등 40건
    - 위헌 1, 인용 5, 합헌 8, 기각 18, 각하 8
  - 9. 30.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연구관의 면직안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2년 제5호(통권 제55호) 발간
- 발간일자: 9. 30.(금)
  - 수록내용: 미국·독일 등 최신 세계헌법판례, 방글라데시 대법원 소개, 국외통신원 소식 등
9. 1. ~ 9. 30. 홈페이지 운영현황
- 접속건수: 47,277건
  - (누적통계:18,853,658건)



○ 심판사건통계표

심판사건총괄표

2022. 9. 30.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 취 하 계	
	합 계	전달 (년) 미 제	이달 (년) 접 수	합 계	결 정									취 하		
					계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9 월 계	합 계	1,878	1,630	248	242	235 <3>	1 <3>				5	8	18	203 (195)	7	1,636
	위헌법률	76	70	6	3	1						1			2	73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0	9	1												10
	헌 법 소 원	계	1,792	1,551	241	239	234 <3>	1 <3>			5	7	18	203 (195)	5	1,553
	§68①	1,209	1,012	197	207	202 <3>	1 <3>			5		18	178 (172)	5	1,002	
	§68②	583	539	44	32	32					7		25 (23)		551	
금 년 누 계	합 계	3,668	1,518	2,150	2,032	2,004 <42>	24 <29>	21 <13>			23	68	135	1,733 (1,705)	28	1,636
	위헌법률	102	70	32	29	27 <16>	15 <13>	7 <3>				5			2	73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1	6	5	1	1				1						10
	헌 법 소 원	계	3,555	1,442	2,113	2,002	1,976 <26>	9 <16>	14 <10>		22	63	135	1,733 (1,705)	26	1,553
	§68①	2,690	906	1,784	1,688	1,665 <12>	5 <9>	6 <3>		22		135	1,497 (1,475)	23	1,002	
	§68②	865	536	329	314	311 <14>	4 <7>	8 <7>			63		236 (230)	3	551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심판사건누계표

1988. 9. 1. - 2022. 9. 30.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 제		
		합 계	결 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합계	46,592	44,956	43,824 <783>	694 <498>	287 <204>	70 <52>	28 <29>	863	3,037	8,350	30,485 (28,241)	10	1,132	1,636	
위헌법률	1,078	1,005	879 <382>	315 <290>	91 <65>	18 <13>	7 <14>		373		75		126	73	
탄핵	3	3	3					1		1	1				
정당해산	2	2	2					1			1				
권한쟁의	122	112	93					20		28	45		19	10	
헌법소원	계	45,387	43,834	42,847 <401>	379 <208>	196 <139>	52 <39>	21 <15>	841	2,664	8,321	30,363 (28,241)	10	987	1,553
	§68①	36,059	35,057	34,214 <182>	124 <107>	82 <59>	20 <16>		841	4	8,321	24,814 (23,108)	8	843	1,002
	§68②	9,328	8,777	8,633 <219>	255 <101>	114 <80>	32 <23>	21 <15>		2,660		5,549 (5,133)	2	144	551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등록도서현황

(2022. 9. 30. 현재, 단위: 권)

구 분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동 양	서 양
2021년 말 누계		172,756	80,470	92,286	35,637	56,649
2022년	전월 말 누계	5,277	2,359	2,918	763	2,155
	9월 중	650	304	346	95	251
	소 계	5,927	2,663	3,264	858	2,406
총 계		178,683	83,133	95,550	36,495	59,055

○ 주요신착도서

- 2022년도 9월 구입도서

【국 내】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문화적 관점에서 본 법의 이해	이 병 훈	대 명 출 판 사	2022
• 주석 특별형법	손 동 권	울 곡 출 판 사	2022
• 최신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1	장 주 영	진 원 사	2022
•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박 중 민	박 영 사	2022
• 헌법의 자리	박 한 철	김 영 사	2022
• 형사소송법	배 중 대, 홍 영 기	홍 문 사	2022

【일 본】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分斷〉と憲法：法・政治・社會から考える	新 井 誠	弘 文 堂	2022
• コロナ対応にみる法と民主主義	市 橋 克 哉	自 治 体 研 究 社	2022
• 死刑について	平 野 啓 一 郎	岩 波 書 店	2022
• 成年後見實務マニュアル	公益社団法人日本 社 會 福 祉 士 會	中 央 法 規 出 版	2022
• 情報刑法	鎮 目 征 樹	弘 文 堂	2022
• 被害者學研究	日本被害者學會	成 文 堂	2022
• 憲法のリテラシー：問いから始める15のレッスン	横 大 道 聰	有 斐 閣	2022
• 憲法の土壌を培養する	蟻 川 恒 正	日 本 評 論 社	2022

## 【영 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the Asia Pacific	Jolene L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Constitutions in Times of Financial Crisis	Tom Ginsburg	Cambridge University	2022

## 【독 일】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Das Grundgesetz, Ein literarischer Kommentar	Georg M. Oswald	C.H. Beck	2022
• Im Spannungsfeld zwischen Sonntagsschutz und Sonntagsöffnung: Verfassungsrechtliche Determinanten der Deregulierung der "weiteren Verkaufssonntage"	Ahmet Kerim Kilic	Nomos	2022
• Strafprozessrecht	Holm Putzke; Jörg Scheinfeld; Christina Putzke	C.H.Beck	2022
• Strafverfahrensrecht	Claus Roxin; Bernd Schünemann; Eduard Kern	C.H.Beck	2022

## 【프랑스】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Edition 2023	Vincent Tchen	LexisNexis	2022
• Contentieux administratif, Edition 2022-2023	Camille Broyelle	LGDJ	2022
• Droit des contrats administratifs	Charles-André Dubreuil	PUF	2022

## - 2022년도 9월 교환도서

- 교환처: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교
- 교환일자: 2022. 9. 1.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早稻田法學 vol.97 no.3-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2

- 교환처: 일본 오사카(大阪)대학교
- 교환일자: 2022. 9. 1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阪大法學 vol.72 no.2	大阪大學大學院法學 研 究 科	大阪大學大學院法學 研 究 科	2022



- 교 환 처: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 교환일자: 2022. 9. 13.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Columbia Law Review vol.122 no.5	Columbia Law School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22

- 교 환 처: 일본 변호사연합회
- 교환일자: 2022. 9. 27.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NIBEN Frontier vol. 216	第二東京弁護士會	第二東京弁護士會	2022

- 2022년도 9월 수증도서

- 기 증 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기증일자: 2022. 9. 1.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2021 Year in Review	Supreme Court of Canada	Supreme Court of Canada	2022

- 기 증 자: 김효진
- 기증일자: 2022. 9. 5.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2007 회원명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07
• E.S.ガードナー伝 : ペリイ・メイスン自身の事件	ドロシイ・B.ヒューズ	早川書房	1983
• Japanese tradition and western law : Emperor, State, and Law in the Thought of Hozumi Yatsuka	Richard H. Mine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Parteiendemokrat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eter Haungs	Colloquium Verlag	1981
• 人權宣言論爭	G. 엘리네크, E. 부뜨미	법문사	1991
• 寫眞으로 본 養正白年 1905-2005	양정창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양정창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2006
• 平時國際公法 (영인본)	석진형	관악사	2004
• 戰時國際公法 (영인본)	주정균	관악사	2004
• 法 속에서 詩 속에서 : 최종고 詩集	최종고	교육과학사	1991
• 騰飛的龍	金 夏 中	세계知識出版社	2004
• 養正白年史 1905-2005	양정창학 100주년 편찬위원회	양정창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2006
• 개념 비평의 인문학	황정아	창비	2015
• 공법연구 (제11집~제14집)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1983~1986
•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제1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2018
• 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신 평	수류화개	2021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국민의 武器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전문 및 해설	조갑제 해설	조갑제닷컴	2015
•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칼 슈미트	관악사	2008
•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김효전	철학과현실사	2000
• 독일 기본권이론의 이해	게오르그 엘리네크 외	법문사	2004
• 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가 일본과 한국에 미친 영향	김효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 모리스 오류의 제도이론	김충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 번역사 산책	쓰지유미	궁리	2001
• 법과 경제 질서 : 21세기의 시대정신	김철	한국학술정보	2010
• 법철학의 길잡이 : 세상에서 법철학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책	호세 움파르트	경세원	2000
• 비교헌법론	칼 뢰벤슈타인	교육과학사	1994
• 서양 헌법 이론의 초기 수용	김효전	철학과현실사	1996
• 용성지	김효전	법문사	2013
• 유럽 법학의 상태 : 구원은 옥중에서	칼 슈미트	교육과학사	1994
• 유럽헌법연구 (제8호, 제13~16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	2010~2014
• 일반국가학	게오르그 엘리네크	법문사	2005
•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 전 대법관 이용우의 법조 인생 회고	이용우	법률신문사	2017
• 정치관계법	김철수	박영사	1983
• 정치원론(영인본)	市島謙謙纂	當山房出版	1889
• 토마스 베른하르트 연구 : 독일의 현대 작가	홍성욱	철학과현실사	1996
• 통합으로서의 국가 : 하나의 원리적 대결	한스 켈젠	법문사	1994
• 한국 마르크스학의 지평 : 마르크스-엔겔스 텍스트의 편찬과 연구	정문길	문학과지성사	2004
• 헌법과 민주주의 :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	에른스트-볼프강 뵘 쾨히르 데	법문사	2003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법문사	1999
• 헌법논집 1975-1985	김효전	민족문화	1985
• 헌법논집 : 1961~2001	갈봉근	세종출판사	2002
• 헌법논집 III : 1990~2000	김효전	세종출판사	2001
•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	김철수	소명출판	2012
• 헌법학연구 (제1집~제28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	1995~2022
•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칼 슈미트	관악사	2007
• 현상과 인식(제42권4호 통권137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8
•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 형법학의 새로운 길	하태영	법문사	2007
• 흥망유수 : 역사에 묻힌 국가흥망의 비밀	권성청	람	2016
• 한국정치연구(제20집 2호~제22집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2013



- 기 증 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기증일자: 2022. 9. 16.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Titre VII	vol.7/8	Conseil	Constitutionnel	Conseil	Constitutionnel	Conseil	Constitutionnel	2022

- 기 증 자: 김효전
- 기증일자: 2022. 9. 22.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61집 1호	대	한	민	국	학	술	원
대	한	민	국	학	술	원	대	한
민	국	학	술	원	대	한	민	국
학	술	원	대	한	민	국	학	술
원	대	한	민	국	학	술	원	2022

○ 헌법재판소장 동정

연 월 일	내 용
2022. 9. 1.(목)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참석(국회 본회의장)
2022. 9. 19.(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접견(헌법재판소장 접견실)
2022. 9. 28.(수)	이원석 검찰총장 접견(헌법재판소장 접견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접견(2022. 9. 19.)



이원석 검찰총장 접견(2022. 9. 28.)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헌법소원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문의: 심판민원과 02-708-3460